



제 428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78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한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 근거 신설	2
2. 약물·환각물질 측정 거부 시 조종면허 취소·정지 근거 신설	6
3. 약물·환각물질 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9
4. 부칙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15.

3. 회 부 일 : 2025.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환각물질 복용의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그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8조, 제61조 및 제64조).

Ⅲ. 검토의견

1.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한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 근거 신설

개정안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약물 또는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해당 조종자에 대해 약물·환각물질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약물·환각물질 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① 누구든지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②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신 설>	<u>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u>
<신 설>	<u>④ 제2항에 따라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u>

현행법은 조종자가 약물이나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관계공무원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¹⁾ 단속과 예방에 한계가 있음.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복용상태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인지 능력 및 반응속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사고 발생시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약물·환각물질을 복용 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레

1) 이와 달리 주취조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조종자를 대상으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음(제27조제2항)

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아울러,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도 마약 등의 약물 영향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경찰공무원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²⁾을 신설하였음.

다만,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과 달리 조종자의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어떤 방법³⁾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측정방법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 단속 현장에서 기준과 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집행상의 자의성이 확대되어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단순히 측정 권한을 규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측정방법을 명시하거나 최소한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타액 간이시약검사 및 소변, 모발, 혈액 등 검체를 활용한 검사

2. 약물·환각물질 측정 거부 시 조종면허 취소·정지 근거 신설

개정안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약물 또는 환각물질 복용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효력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① ----- ----- ----- -----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약물·환각물질----- ----- -----수상 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약물·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 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u>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 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한 경우로 한정한다)</u>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는 음주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에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근거가 없어 조종자가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단속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관계공무원의 약물·환각물질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를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측정 요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해소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해양경찰청은 약물 또는 환각물질 영향 상태에서 측정 요구에 불응한 조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약물 조종은 인지·판단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해양사고의 중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실상 단속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1차 위반 시 면허 정지보다는 곧바로 면허 취소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음주측정 / 약물·환각물질 측정 불응 시 현행 개정안 비교】

구 분	음주측정 불응시	약물·환각물질 측정 불응시	
		현 행	개 정 안
동력기구	▶ <u>행정처분</u> 필요적 면허취소	×	▶ <u>행정처분</u> 1차 면허정지(6월) → 2차 면허취소

3. 약물·환각물질 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개정안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약물 또는 환각물질 복용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⁴⁾ 조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동력수상레저기구⁵⁾ 조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5호의2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u><신설></u>	제61조(벌칙)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제1항을----- ----- ----- ----- <u>5의2.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u> <u>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u>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

5) “무동력수상레저기구”는 엔진이나 모터 등 동력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풍력 등 자연력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수상레저용 기구로 조정, 카약, 카누, 윈드서핑 등을 말함.(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

6.·7. (생 략)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3. (생 략) 2의4.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신 설> 3. ~ 11. (생 략) ② ~ ④ (생 략)	<u>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u> 6.·7. (현행과 같음) 제64조(과태료) ① ----- -----.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제28조제1항을----- ----- ----- ----- 2의5.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음주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게는 형사처벌,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록 규정하고 있으나,⁶⁾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에서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 단계에서 단속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또한, 약물·환각물질 복용 조종이 주취조종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위험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제재기준에 차이가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약물 또는 환각물질 복용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주취조종과 마찬가지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형사처벌을,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환각물질 복용 등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취조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6)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2의2. (생략)

2의3.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음주측정 / 약물·환각물질 측정 불응 시 현행 개정안 비교】

구 분	음주측정 불응시	약물·환각물질 측정 불응시	
		현 행	개 정 안
동력기구	▶ <u>형사처벌</u>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u>형사처벌</u>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무동력기구	100만원 이하 과태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로 유사 입법례를 살펴 보면, 「도로교통법」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⁷⁾ 「철도안전법」 역시 약물·음주 여부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6항, 2026. 4. 2. 시행 예정),

8) 「철도안전법」 (제79조 제3항 제15호)

4. 부 칙

개정안은 약물 또는 환각물질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이에 대한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하면서, 그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측정 장비 운용체계의 정비, 단속 인력의 교육·훈련, 관련 지침 마련 및 대국민 홍보 등 집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6개월은 다소 부족하므로 충분한 시행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약물·환각물질을 복용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등 불이익적 행정제재처분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므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는 취지의 적용례를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 1

유사입법례(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법률 제20864호, 2025. 4. 1. 개정, 2026. 4. 2. 시행)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의2(벌칙)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숨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화학물질관리법」 >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 3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 비교

□ 약물조종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25.4.1 개정, ’26.4.2 시행)과 유사하게 개정 중이며, 두 개정안 간 비교표는 아래와 같음

구분	「수상레저안전법」		「도로교통법」
	현행	개정안	
대상 물질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 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측정 주체	x	1. 경찰공무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 종사자	경찰공무원
측정 조건	x	약물·환각물질의 영향 하에 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약물의 영향 하에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 방법	x	1. 최초 측정방법 x 2. 측정 결과에 불복 시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가능	1.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 2. 측정 결과에 불복 시 혈액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 가능
면허 처분	약물·환각물질 복용상태에서 조종 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취소 또는 효력정지(1년 내)		운전면허 취소
	x	측정불응 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취소 또는 효력정지(1년 내)	
벌칙	구분		구분
	약물 조종	동력	1년↓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무동력	100만원↓ 과태료
	x	측정 불응	측정 불응
		동력	1년↓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x	무동력	100만원↓ 과태료
		측정 불응	측정 불응
	x	1회 위반	5년↓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10년 내 재위반	2~6년 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x	1회 위반	5년↓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10년 내 재위반	1~6년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